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60

발의연월일: 2025. 9. 1.

발 의 자:김병기・박지원・이성윤

박상혁 • 이인영 • 이기헌

장종태 • 문금주 • 허 영

박용갑・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 순회사서·사선교사"로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도서관 자료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이하 "순회사서"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순회사서는 사서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이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에는 학 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 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청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 의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도서관 자료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간의 연 계 ·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 서(이하 "순회사서"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순회사서는 사서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 서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전담부서의 구성, 순회사서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 ·사서교사-----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 · 배 치기준 · 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

혓읔	고려하여	정하다
Ö근	프니이에	0 1 1

-----.